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훈련경비 반납금 체납액 징수 업무의
관할 세무서장 위탁 근거 마련〉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33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21.
3. 회부연월일 : 2025.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훈련중단 등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장기적인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교육훈련경비 반납금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① ~ ④ (생략)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 ----- ----- ----- ----- ----- ----- ----- ----- -----국세강제징수----- --.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행	개정안
	<u>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u> <u>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u>

2. 검토의견

현행법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그의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3조제5항).

그리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은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를 구체화하여 열거하면서(제36조제1항 각 호)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같은 조 제2항).¹⁾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개정안은 교육훈련경비 반납금 체납액의 징수를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육훈련경비 반납금 체납액의 징수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동 의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례²⁾를 감안하여 동 사안에 관한 법적 규율 관계를 행정기관 간 행정권한의 위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행정권한의 위탁은 주로 행정능률의 향상이나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법상의 과징금, 환수금, 부가금, 반납금, 체납액 등 각종 금전을 징수하는 행정권한과 관련하여서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되 해당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음.³⁾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유사 규정 법제처 법령해석례(10-0298, 2010.11.5.)]

“현행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 등에 의뢰,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며,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님.”

“명예퇴직수당의 징수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면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그 의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만약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임.”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

개정안은 이를 공무원의 교육훈련경비 반납금 징수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및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의 위탁 근거와 그 내용이 동일한데,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경비 반납금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행정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동 징수사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복무의무 불이행 등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다만, 행정권한의 위탁은 법률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배분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위탁의 요건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조직 법정주의’

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생략)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생략)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④ (생략)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⑦ (생략)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위탁의 요건⁴⁾은 그 내용이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요건을 구체화하는 세부 기준이나 집행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세 체납처분”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국세강제징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개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에 따라 국세의 “체납처분”이 “강제징수”로 법률 용어가 변경됨⁵⁾에 따라 「공무원 인재개발법」상 교육훈련경비 반납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동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 용어를 법문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징수 의뢰 규정은 당사자가 교육훈련경비 반납 명령에 불응하는 등 장기 미환수 사례⁶⁾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력있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는 바,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무의무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교육훈련경비 환수 업무를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4) 위탁에 따른 세무당국의 행정력 부담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교육훈련 경비 반납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도록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됨.

5) 개정사유 :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인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하려는 것임.

6) 국외훈련 : 의무복무위반 1건('16년, 15,146,320원), 국내훈련 : 훈련중단 1건('18년 6,639,000원), 의무복무위반 1건('19년, 17,739,000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해 국제
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히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2